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14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9. 9. 9.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9. 9.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조한영 산업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이 1999.1.29. 법률제5708호로 개정시행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이사는 상임·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하고,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토록 하며,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토록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1조)

○공사의 임직원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위탁 계약에 의거 대행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토록 하고, 예산의 성립·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 보고토록 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예산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함(안 제21조)

○공사의 인사규정, 직제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얻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2항)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토록 하며,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이상의 주

민연서로 위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송부토록 하여 공사경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의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 전문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규정함(안 제38조)

○ 구청장의 공사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 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승인권이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표준화하고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상황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산서·재무제표·년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평가·영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등 조례 내용을 대폭 정비하였는바,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있던 각종 승인권·인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3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99.3.31자로 개정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 의견수렴 및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늦어짐.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을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일정한 금액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을 조달의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관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제12조제5항의 이사회 이사의 범위와 한달에 몇회 개최 및 수당금액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수당지급 관련한 이사의 범위는 구청 해당국장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이상을 말함.
○ 답변요지(양석용 상임이사) : 한달이 1~2회 개최되며, 1회의 수당은 10만원이고 식대는 별도 지출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큰 하자가 있을 경우 사장도 면직할 수 있고 문책할 수 있음.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제8조제4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됨. 구, 구의회, 공사에서 추천하는분, 감사 등 7명정도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이 구청 국장급으로 구성될 경우 청장의 눈치를 본다거나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준칙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대학교수나 전문요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는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의원님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할 것으로 기대함.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기명, 무기명 결정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명시해서 제정할 수 있는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검토해 보겠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제37조 권한의 위탁의 범위는?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 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1999.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이 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시행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나.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함 (안 제8조).

라. 이사는 상임·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하고,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토록 하며,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토록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마.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바. 공사의 임직원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 구성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사.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위탁계약에 의거 대행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아.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토록 하고, 예산의 성립·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 보고토록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예산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함 (안 제21조).

자. 공사의 인사규정, 직제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얻도록 규정함 (안 제32조제2항).

차.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토록 하며,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이상의 주민연서로 위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송부토록 하여 공사 경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함 (안 제34조).

카.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의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 전문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규정함 (안 제38조).

타. 구청장의 공사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0조).

3.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1999·1·29, 법률 제5708호)

○ 지방공기업법시행령(1999·3·13, 대통령令 제16213호)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되, 설립자본금은 25억 이상으로 하며, 구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사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이사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장) ①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국장급(서기관) 2명을 포함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청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선임 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의결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사 업

제17조(사업) 공사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구 재정확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개발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등)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재무회계

제19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4조(재정지원) 구는 공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선수금) ①공사는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을 경우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사채발행예정액이 10억원미만으로서 당해 예정액을 합산한 후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 또는 구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구의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 또는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일시차입등) ①공사는 예산의 범위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 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제 5 장 감 독

제32조(감독) ①구청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직제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복리후생등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3조(보고 및 검사등) 구청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상황 공표 등) ①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영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구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250분의 1 이상의 주민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의 담당관·과·동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8조(경영평가) ①구청장은 매년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장의 면직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종료후 4월이내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①공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제2조(사장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의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